

#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



효력발생예정일: 2019 년 02 월 26 일

## 투자설명서 변경

### 1. 기재 정정 사유

- 1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09.28 시행)
- 2) 문구 명확화를 위해 적용기간 경과한 문구 삭제
- 3) 결산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변동성 수치 및 위험등급 변경 반영 (3 등급-> 2 등급)
- 4) 결산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<b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	가. 정보 업데이트	-	<b>운용현황 업데이트</b>
6. 나. 종류형 구조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문구 명확화를 위해 적용기간 경과한 문구 삭제	주식) 판매회사의 보수율 중 <u>종류 C-e 는 매년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됩니다.</u> 가. 2010 년 9 월 6 일부터 2011 년 5 월 2 일 까지 : 1.450% 나. 2011 년 5 월 3 일부터 2012 년 5 월 2 일 까지 : 1.300% 다. 2012 년 5 월 3 일부터 2013 년 5 월 2 일 까지 : 1.150% 라. 2013 년 5 월 3 일 이후 : 1.000%	<b>(삭제)</b>          <b>(*실제 판매회사보수율은 변동없으며 기관경과문구만 삭제하였습니다. 종류 C-e 클래스의 판매보수는 연 1.000%로 단일하게 적용됩니다.)</b>
8. 다. (2) 금전차입 등의 제한	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(2018.09.28 시행)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<p>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</p> <p>2.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</p>	<p>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</p> <p>2.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</p> <p><b>3.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</b></p>
9. 가. (1)운용전략 및 투자방침	정보 업데이트		<b>비교지수 국가별, 주요업종별 비중 업데이트</b>
9. 나. ③목표헤지비율 및 환헤지의 장단점 라. 아시아시장 경제 현황	정보 업데이트	-	<b>환헤지비용 및 수치 업데이트</b>
10.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변동성 수치 업데이트 및 위험등급 변경	<p>위험등급: <u>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</p> <p>결산일 기준 3년 표준편차: <u>14.47%</u></p>	<p>위험등급: <b>2 등급(높은 위험)</b></p> <p>결산일 기준 3년 표준편차: <b>15.17%</b></p>
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업데이트	-	<b>업데이트</b>
<b>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정보 업데이트	-	<b>업데이트</b>
<b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1.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정보 업데이트	-	<u>업데이트</u>
<b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2. 가 의무해지	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(2018.09.28 시행)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b>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b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p>

### 간이투자설명서 변경

#### 1. 기재 정정 사유

- 1) 결산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변동성 수치 및 위험등급 변경 반영 (3 등급-> 2 등급)
- 2) 결산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간이투자설명서 전반	정보 업데이트	-	재무정보 등 업데이트

### 집합투자규약 변경

#### 기재 정정 사유

- 1) 문구 명확화를 위해 적용기간 경과한 문구 삭제
- 2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8.09.28 시행)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자산운용 지시 등)	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(2018.09.28 시행)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b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b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 39 조(보수)	문구 명확화를 위해 적용기간 경과한 문구 삭제	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 종류 C-e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50 2. 판매회사보수율 : 가. 2010 년 9 월 6 일부터 2011 년 5 월 2 일 까지 : 연 1000 분의 14.50 나. 2011 년 5 월 3 일부터 2012 년 5 월 2 일 까지 : 연 1000 분의 13.00 다. 2012 년 5 월 3 일부터 2013 년 5 월 2 일 까지 : 연 1000 분의 11.50 라. 2013 년 5 월 3 일 이후 : 연 1000 분의 10.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6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8	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 종류 C-e 1.(좌동) 2. 판매회사보수율 : <b>(삭제)</b> 연 1000 분의 10.00  3. (좌동) 4. (좌동)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(*실제 판매회사보수율은 변동없으며 기관경과문구만 삭제하였습니다. 판매보수는 연 1.000%로 단일하게 적용됩니다.)
제 45 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(2018.09.28 시행)	<p>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</li> <li>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</li> <li>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</li> <li>투자신탁의 등록 취소</li> <li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li> </ol>	<p>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</li> <li>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</li> <li>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</li> <li>투자신탁의 등록 취소</li> <li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b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b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li> </ol>
제 49 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	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(2018.09.28 시행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 26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</li> <li>제 38 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</li> </ol> <p>(신설)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 26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</li> <li>제 38 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</li> <li><b>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</b></li> </ol>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<u>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</u>